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22호의16서식] <개정 2023. 6. 30.>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에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년 월일)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사업장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보험구분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직종 부호																				
노무제공일수 ("o" 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일					일					일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 제42조의6제2항 단서, 제42조의7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용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용합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4. "노무제공일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직종이 건설기계조종사(직종코드: 952),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코드: 986), 노무제공 개시일이 2023.12.31. 이전인 골프장캐디(직종코드: 959)의 경우 "노무제공일수"를 작성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 및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 따른 월 보수액을 말합니다.
6.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고용보험만 작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4.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직종 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61(실연)문학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62(실연)미술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63(실연)사진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64(실연)건축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65(실연)음악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466(실연)국악
			467(실연)무용
노무제공자	950	951	952
	952	953	954
	959	954	955
	967	955	956
	958	956	957
	949	957	958
	945	958	959
	946	959	960
	951	960	961
	948	961	962
	941	962	963
	942	963	964
	986	964	965
	960	965	966
	947	966	967
	968	967	968
		968	969
	969	970	
	970	971	
	971	972	
	972	973	
	973	974	
	974	975	
	975	976	
	976	977	
	977	978	
	978	979	
	979	980	
	980	981	
	981	982	
	982	983	
	983	984	
	984	985	
	985	986	
	986	987	
	987	988	
	988	989	
	989	990	
	990	991	
	991	992	
	992	993	
	993	994	
	994	995	
	995	996	
	996	997	
	997	998	
	998	999	
	999	1000	

처리 절차

